

2025타경50993

청주지방법원 경매4계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건명: 이상학 소유물건(2025타경50993)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수경

감정평가서번호: JS2503-2008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성감정평가사사무소

#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안 창 호

감정평가액	사억일천구백만원정 (₩419,000,000.-)					
의뢰인	청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수경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출처	청주지방법원 경매4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이상학 (2025타경50993)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3.31	2025.03.31	2025.04.09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개호  이	구분건물	1개호  하  여	-	419,000,000  백
	합 계					₩419,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광혜원리 소재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집합상가로서 청주지방법원에서 의뢰된 법원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감정평가 근거 및 기준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제반 감정평가이론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3.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 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4. 감정평가 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 5.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5년 03월 31일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03월 31일이며 현장조사시 대상 물건의 존재 여부, 의뢰 목록과 현황의 부합 여부, 대상물건의 특성, 기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을 조사하였음.

### 7. 그 밖의 사항

가. 본건 구분건물의 위치 확인은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확인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 대상물건 개요

### ■ 대상물건이 속한 전체건물의 현황

【출처 : 집합건축물대장】

구 분	내 용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3 外
명 칭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구조 및 규모	철근콘크리트조 지상5층
사용승인일자	2004-05-19
주용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비 고	-

### ■ 대상물건 현황

기호	구 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전체면적 (㎡)	대지지분 (㎡)	전용율 (%)
1	3층 301호	299.0	85.14	384.14	125.4888	77.8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II. 감정평가의 방법

### 1. 감정평가 근거 법령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2. 감정평가 방식

### ■ 구분소유권의 평가방법

- ①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유사거래사례를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보정·비교하여 구분소유권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
- ② 대상 구분소유권이 장래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
- ③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1동 전체의 가격을 구한 후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 대상구분소유권에 배분하는 방법 등이 있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가.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로서 시산가액 조정은 생략하였음.

### 4. 그 밖의 감정평가 사항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I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 감정평가 개요

대상물건은 위치, 부근의 상황, 규모,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요인, 인근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 2.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 가.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 분	거래사례 A	거래사례 B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1085번지, 113동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98-1번지
건물명칭	-	-
층 . 호수	1층 10*호	1층 10*호
사용승인일	2010-12-29	1995-09-06
이용상황	소매점	소매점
전유면적(m <sup>2</sup> )	37.80	31.50
거래가액	115,000,000	65,000,000
전유면적 단가 (원/m <sup>2</sup> )	3,040,000	2,060,000
거래시점	2023-01-30	2023-05-04
비 고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유사 물건의 평가사례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구 분	평가사례 1.	평가사례 2.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427-7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1085, 113동
건물명칭	남송빌딩	-
층 . 호수	1층 10*호	1층 10*호
사용승인일	1991-12-13	2010-12-29
이용상황	근린생활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전유면적(m <sup>2</sup> )	56.00	75.60
감정평가액	130,000,000	281,000,000
전유면적 단가 (원/m <sup>2</sup> )	2,320,000	3,720,000
기준시점	2023-02-03	2021-06-09
평가목적	담보	담보
비 고	-	-

다. 인근 유사물건 가격수준

구 분	시세수준	비 고
본건 집합상가	대체로 전유면적 기준 1,400,000원/m <sup>2</sup> 내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3.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가. 비교 거래사례

####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b>기호 A</b>	(자료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1085, 113동		
건물명칭	-	층·호수	1층 10*호
사용승인일	2010-12-29	거래가액(원)	115,000,000
이용상황	소매점	전유면적단가 (원/㎡)	3,040,000
전유면적(㎡)	37.80	거래시점	2023-01-30

#### 2) 비교 거래사례 선정사유

인근지역내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 및 물적 유사성이 가장 높은 사례 기호(A)를 비교 거래사례로 선정하였음.

### 나.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선정된 비교 거래사례에 거래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로 정상화 하는 작업으로서, 선정된 비교 거래사례는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인 동기의 개입없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됨.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임대동향 수익률 중 대상물건의 물적 특성 및 지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충청북도 지역의 집합상가 분기별 자본수익률을 활용하여 시점수정 하였으며, 기준시점 현재 지수가 발표 되지 않은 경우 최종발표지수를 기준으로 연장 적용하였음.

<충청북도>

적용기간	용도	시점수정치	비 고
2023.01.30 ~ 2025.03.31	집합상가	<b>0.98995</b>	집합상가 지역 : 충북 (23.01.30~25.03.31)  2023년 01분기 : -0.37 2023년 02분기 : -0.43 2023년 03분기 : -0.47 2023년 04분기 : -0.06 2024년 01분기 : 0.28 2024년 02분기 : 0.26 2024년 03분기 : -0.02 2024년 04분기 : -0.18 2025년 01분기 : -0.18 (2024년 04분기 자료)  $(1-0.0037*61/90)*(1-0.0043)*(1-0.0047)*(1-0.0006)*(1+0.0028)*(1+0.0026)*(1-0.0002)*(1-0.0018)*(1-0.0018*90/92) \approx 0.98955$

### 라. 지역요인

비교 거래사례는 본건과 인근지역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1.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가격형성요인) 비교

【대상물건 기호(1) : 거래사례(A)와의 비교】

요 인	세부항목(상업용)	격차율	비 고
단지외부요인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1.16	상가밀집도,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등 우세임.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등),		
	배후지의 크기, 상가의 성숙도,		
	차량이용의 편의성(가로폭, 구조 등) 등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내부요인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건물전체의 공실률,	1.00	대체로 대등함.
	건물 관리상태 및 노후도, 각종 설비의 유무,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라인별),	0.40	층별 효용에서 열세임.
	고객의 출입 및 흐름의 계통 및 관계위치,		
	주출입구와의 거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계단과의 거리,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층고 등내부 평면방식(베이)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등함.
격차율 계		0.464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단가 결정(전유면적 기준)

산식 : 거래사례 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지역요인 × 개별요인(가격형성요인) 비교								
기호	비교 거래사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사례	단가 (원/㎡)						
1	A	3,040,000	1.000	0.98955	1.000	0.464	1,395,820	1,400,000

2) 시산가액 결정

산식 = 면적 × 단가						
기호	구 분	전유면적(㎡)	단가(원/㎡)	산정가액(원)	결정가액(원)	비고
1	3층 301호	299.0	1,400,000	418,600,000	419,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V. 감정평가액 결정

###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대상물건의 주위환경, 층별·위치별·향별 효용과 인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방매사례, 평가사례의 가격,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및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 2.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전유면적(m <sup>2</sup> )	감정평가액(원)	비고
기호	층/ 호수			
1	3층 301호	299.0	419,000,000	-
합계			₩419,000,000	

#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1동의 건물의 표시	529-3, 529-4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1층	269.75	419,000,000							
	2층				384.14									
	3층				384.14									
	4층				384.14									
	5층				267.59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화랑길 77	529-3	대	철근콘크리트조 3층 301호	299	29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529-3	대			1.2.소유권	27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529-4	대	1.2.	277	
	토지의표시 : 1.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125.4888	
	2. 동 소												-----	125.4888
대지권의 종류:	552													
대지권의 비율:														
<b>합 계</b>						<b>₩419,000,000.-</b>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광혜원리 소재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및 소규모 점포 등이 소재하는 면소재지 주변 상가지대임.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자유롭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통과하여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일반적 교통상황은 양호함.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건내 제3층 301호로서  
 외 벽 : 석재마감 등  
 내 벽 : 인테리어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등

## (4) 이용상태

기호(1) :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 (5) 설비내역

대상건물이 속한 건물내에 위생, 급배수설비 되어 있고 승강기설비는 있으나 현재 미가동중임.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 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가장형의 토지로서 상업용건부지로 이용중임.

##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측으로 소로와 서측으로 중로와 접함.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소로1-2)(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0-06-30)(중로3-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0-06-22)(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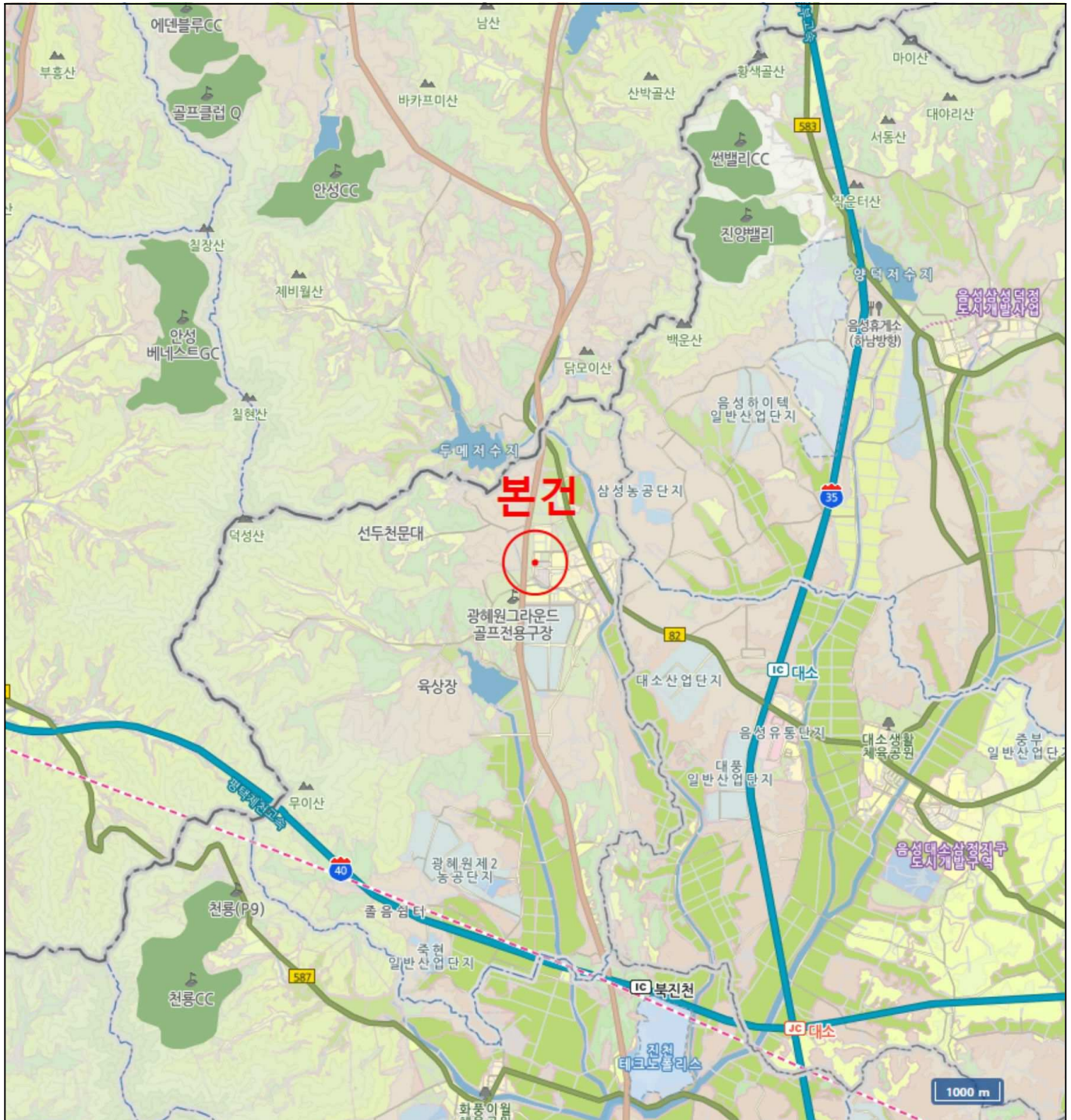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광역위치도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3외 3층 301호
-----	-----------------------------------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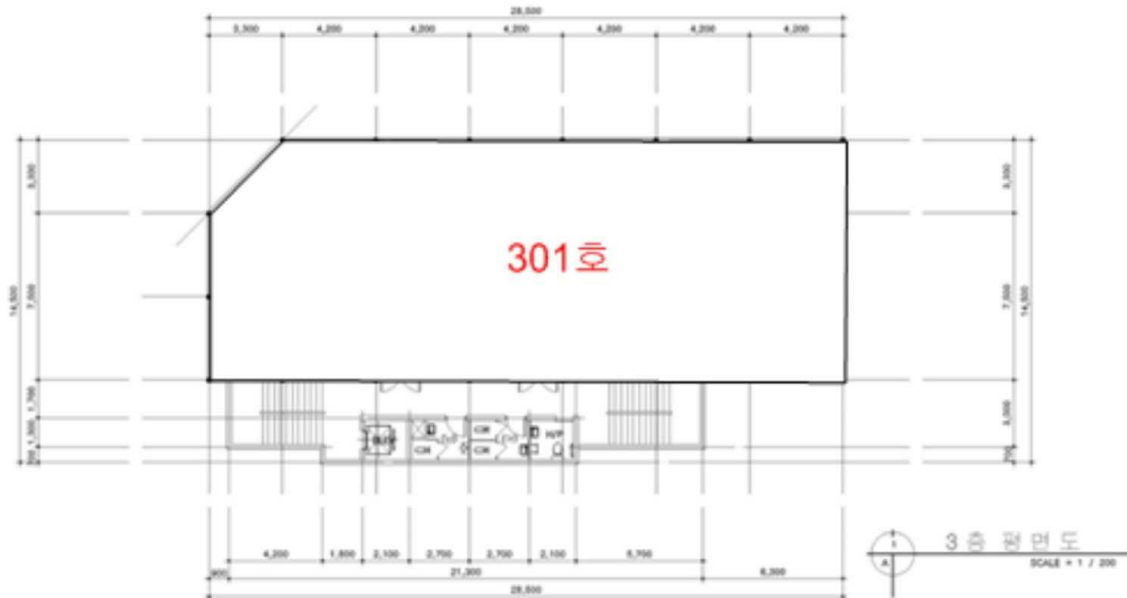


소재지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3외 3층 301호
-----	-----------------------------------



# 호 별 배치도

No Scale



기호(1):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9-3외  
3층 301호



(1)



